

서울동부지방법원

제 12 민사부

판 결

사 건 2014가합100151 제3자의
원 고 권○○ (5*****-2*****)
서울 ○○구 ○○○○○8길 76 ○○○○○ ○○○○동 ○○○호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○○

피 고 ○○건설산업 주식회사
서울 ○○구 ○○○○56길 85 ○○○○○
대표이사 이○○
소송대리인 변호사 위○○

변 론 종 결 2014. 6. 13.
판 결 선 고 2014. 6. 27.

주 문

1. 피고가 김○○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123**호 손해배상(기)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.
2.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

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2012. 12. 7. 김○○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123**호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3억 5,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2013. 1. 8. 위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'이 사건 지급명령'이라 한다).

나. 피고는 2013. 1. 30.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근거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4**호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(이하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3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서울 ○○구 ○○○○○8길 76 ○○○○빌 아파트 ○○○○동 ○○○호에 관하여 2008. 7. 9. 임대인 명의 손△△, 임차인 명의 원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, 임대차기간 2008. 8. 19.

부터 2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, 그 무렵 원고가 손△△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2008. 8. 21. 위 아파트로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8. 8. 28.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, 이 사건 채권의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, 피고가 김○○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.

3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김○○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은 김○○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을 제2호증의 1,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지영

 판사 이재찬

판사 김택형

채권 목록

서울 ○○구 ○○○○○8길 76, ○○○○동 ○○○호(○○○○빌) 아파트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만료, 해지 등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이 수령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3,617,512원에 이를때까지의 금액. 끝.